

서 전액 용자지원토록 하되,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 7개소만 용자 지원되어 나머지 6개소는 도시가스 기금에서 용자지원토록 하여 2000년도 소요예산은 총 239억 80백만원으로 국비 88억 60백만원, 시비 109억 20백만원, 도시가스기금 42억원임.

-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관련 재정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의안심의 과정에서도 국고보조 지원문제, 천연가스 시내버스 대당가격 결정,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위한 제반 기반조성, 천연가스 소매가격결정 등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으나 날로 심화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주범인 경유차 시내버스를 저공해 버스로 교체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39억 60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확보하고, 2000년도 천연가스 도입목표를 당초 200대에서 480대로 확대하는 등 서울시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경영여건이 열악한 영세 운수업체로서는 보조비율이 당초 66%에서 53%로 하향조정되고 용자비율이 34%에서 47%로 늘어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저공해 시내버스 도입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조금 지원비율을 확대하고, 용자조건도 국비와 도시가스기금도 시비와 동일조건으로 저리용자 지원하는 방안과 교통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시내버스 고급화사업 및 신규차량 교체시와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질소산화물의 저감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 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보조금 및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에는 목적 이외에 사용한 보조금 및 융자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 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로, “용자”를 “보조 및 용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정지원대상) 자금의 재정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대상 :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용자대상 :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3조의 제목 “(용자한도액)”을 “(재정지원한도액)”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용자 및 상환조건)”을 “(재정지원조건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의 제목 “(용자계획의 공고)”를 “(재정지원계획의 공고)”로 하고, 동조본문중 “매년도말까지”를 “매년도초에”로, “다음년도 자금용자계획”을 “당해년도 재정지원계획”으로 하며, 동조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지원대상
2. 재정지원총액
3. 재정지원한도
4. 재정지원조건 및 절차 등

제7조의 제목 “(용자신청 등)”을 “(재정지원신청 등)”으로 하고, 동조본문 및 제3호·제4호중 “용자를”을 각각 “재정지원을”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용자심사회의 개최 등)”을 “(재정지원심사회의 개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자금의 용자대상, 융자금액”을 “자금의 재정지원대상, 금액”으로, “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자금용자심사회의”를 “천연 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심사회의”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시장은 재정지원신청금액이 재정지원계획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대상자별로 재정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그 조정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시장은 확정된 재정지원대상자 및 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재정지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자금대출)"을 "(용자금대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중 "용자를 받은 자"를

"재정지원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보조금 및 용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에는 목적 이외에 사용한 보조금 및 용자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및충전시설설치자금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및내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사업비		총사업비	원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원
자기자본액		원		자기자본 부담액	원
사업기간					
위와 같이 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및충전시설설치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지원자금 사용계획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3. 주주총회 결의록 4. 전년도 대차대조표				